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 2021.5.28. 규정 제85호

일괄개정 2024.5.7. 규정 제17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공단 소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규정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 구성·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또는 자문기관을 말한다.
2. “위원회 관리부서”라 함은 위원회에 대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위원회 운영부서”라 함은 위원회를 구성·운영 등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 지침, 방침 중 어느 하나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설치목적 및 기능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연임횟수 제한
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회의의 소집 및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5.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의 업무대행자
7.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심의 또는 의결 등의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내부 또는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외부위원을 명시하고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력이 풍부한 자로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 임명 또는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원회는 감독권한에 따른 영향력 행사로 의사결정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부처 공무원의 소관 위원회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3. 위원의 대리출석 등으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상위 직급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한다.

④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일인이 5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자격을 규정한 경우

2. 특수 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⑤ 외부위원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절차를 거치거나 관련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위촉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의 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위촉하는 경우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 또는 특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심의·의결 등을 마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부패행위 등에 따른 해촉 기준 등을 자격요건에 명시하고, 위원 위촉 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윤리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부당하게 개입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운영부서의 담당 **부·소장**으로 하고 서기는 운영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4. 5. 7.>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회의 안건이 공개될 시 공정한 위원회 운영이 곤란한 사항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의결로써 의결에 갈음할 수 있으며, 2회 연속 서면회의는 지양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곤란한 경우
- ③ 위원회는 회의 참석에 대하여 대리참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규정 등에 의한 직무위임자가 대리참석할 수 있다.
- ④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제3항의 단서에 의거 직무위임자가 대리 참석하는 경우 해당 위원의 위임장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2. 위원회는 법령, 사규 등에 규정된 심의·의결 등의 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심의·의결 등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3. 위원회 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의 등 기준을 사전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

득을 취하는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의결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법령, 규정,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회 운영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최기관
3. 일시 및 장소
4.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5. 진행 순서
6. 심의 안건
7. 발언 내용
8.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9.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비공개 사유를 명시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자기 소관사무(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 및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법령, 규정, 정부 또는 여수시의 지침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외부위원이 회의참석 이외에 회의안건 보고서 작성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의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참석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외부위원이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 등 실비변상 여비를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여비 지급 시 자치단체에서의 여비지급과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

④ 회의 참석수당 등은 참석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⑤ 공단 소속 임직원에게는 담당사무 수행여부와 관계없이 기관 내부에서 주관하는 위원회 등에 참석한 경우와 각종의 심사(심의)·자문·평가 및 안전 검토 등에 참여한 경우에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13조(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 등) ①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필요에 따라 공단의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점검 시 소관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을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위원회 현황과 활동내역을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성·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에 3회 초과 연임 및 5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76호, 2024. 5. 7.>

이 규정은 2024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윤리서약서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서명)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2.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공사·계약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4.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
5.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
6.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
7.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향응·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알선행위 금지
8.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진 단 내 용	체크사항	
		예	아니오
1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그 곳에 근무하고 있다.		
2	위원회 기능과 직접 관련된 공사·용역·계약 또는 연구·논문 등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4	위원회 직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타 위원회에서 현재 활동 중이다.		
5	위원회 관련 정보나 심의·의결 결과가 본인의 권리·의무관계 변동, 재산상의 이익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 ‘예’라고 답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제7조 관련)】

위 임 장

본인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 _____위원회 위원으로서, 금번 위원회에 참석
하지 못함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_____위원회(____년 ____월 ____일)에 출석
하여 위원회와 관련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 일체의 권한을 행사
하도록 위임합니다.

대리인 소속 _____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위임인 소속 _____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년 월 일

여수시도시관리공단 _____위원회 위원장 귀하